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수를 공동방지사설에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의 적산유량계 설치를 합리화하고, 폐수를 이용한 연구나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예외 기준을 확대하며, 폐수처리 연구 촉진을 위하여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부지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공공처리시설 폐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시 방류수 처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시 「하수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려는 것임

아울러,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 간소화·구체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 수행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3)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평가 주체를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하고, 평가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나. 법에서 위임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제·제거하기 위한 조치 신설(안 제26조의3)
- 오염물질의 유출·확산 방지, 유출된 오염물질 제거, 방제에 사용한 자재 및 약품의 안전한 처리 등을 규정
- 다. 공동방지사설의 적산유량계 부착 합리화(안 제45조제1항제5호)
- 용수사용량으로 폐수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적산유량계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함
- 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 확대(안 제70조의2제1항)
- 연구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운영·관리 예외 기준에 포함
- 마.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서류 간소화 및 구체화(안 제73조제2·3항)
- 1)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출 생략
 - 2)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인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바. 타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을 현행화(안 제78조제2호)

사.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4조의2)

아. 폐수배출시설 분류표 현행화 및 적용기준 합리화(안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11차, '24)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코드를 현행화하고,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부지 내 시설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폐수를 부지 내 공공처리시설 유입 처리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등 구체화(안 별표6, 별표17·18)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을 규정

2)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여과형 시설의 경우 오염된 여과재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여과재를 세척하는 방식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 확대에 대한 조치사항 마련(안 별표15)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폐수 공급 즉시 중단 조치를 신설

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검사 기간 명확화(별표 19의 2)

타.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서 등에 방류수 처리계획 항목 신설(별지 제40호의2, 제40호의3, 제40호의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을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로, “그 결과를 공개”를 “공개”로 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의 방지와 누출·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등을 위한 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유출·누출 방지
2.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3. 유출·누출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수거

4.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에 사용된 자재 및 약품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한 처리

제45조제1항제5호 중 “각각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제2호의2”로 한다.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연구 계획 또는 폐수 활용 계획(각 계획에는 목적, 필요량, 운반계획, 처리계획 등 포함)

제73조제2항제3호 중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면”을 “도면(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우유출수의 유입구와 유출구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을 “다음 각 목의 활동으로 비점오염물질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식의 청소계획

나. 강우유출수 오염도 육안 검사, 덮개 점검, 부지 청소 등 사업장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 이행 계획

제78조제2호 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4호 중 “기술을 개발·보급하기”를 “기술 개발·보급 및 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를”로 한다.

별표 4 제2호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를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0”으로 하고, “19102”를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9102”로 하며, 제2호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를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0”으로 하고, 같은 호 3)의 “0729 토탄채굴시설”을 “0729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0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별표 4 제2호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를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0”으로 하고, 같은 호 3) 폐수 배출시설 07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0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별표 4 제2호6)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4”를 “1041”로 하고, 같은 호 7)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5”를 “1042”로 하며, 같은 호 8)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61”을 “1051”로 하고, 같은 호 9)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62”를 “1052”로 하며, 같은 호 10)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8”을 “109”로 하고, 같은 호 11)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72”를 “1081”로 하며, 같은 호 12)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중 “1074”를 “1083”으로 하고, 같은 호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60
1082
1089
1070

별표 4 제2호1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1073”을 “1082”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1071”을 “1060”으로 하며, 같은 호 2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19102”를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9102의”로 하고, 같은 호 32)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21
20122

별표 4 제2호4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26293”을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6293의”로 하고, 같은 호 48)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495
20499

별표 4 제2호67)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기호(○) 중 “26293”을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6293의”로 하고, 같은 호 75) 한국표준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7012
381
382

별표 4 제2호에 79) 공통시설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지내 시설로서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된 폐수를 부지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한다.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영향개발기법이 적용된 시설로 본다.

별표 15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연구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미생물 식종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폐수를 활용한 경우에는 폐수 공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2호나목1)가) 중 “체류시간, 여과재”를 “체류시간, 여과재, 여과재 세척방법 및 교체주기”로 하고, 같은 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과재 내 포획된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재 세척(이하 “역세척”이라 한다)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다만, 역세척을 대신하여 여과재를 교체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역세척을 갈음할 수 있다.

라) 역세척은 무인운전에 의한 자동 방식과 인력에 의한 수동 방식으로 구분하며,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자동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과재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 경우 강우 종료 후 역세척을 실시하고 손실수두 증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손실수두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역세척을 갈음하여 여과재를 교체하는 구조로 설계한 경우 손실수두 증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손실수두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여과재를 교체하여야 하며, 기존 여과재와 포획된 오염물질은 적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여과조 내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별표 19의2 제1호나목2) 본문 중 “15일마다”를 “15일마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3호 중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을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뒤쪽 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를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 별지제40호의3 및 별지제4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시설 주소	(전화번호:)		
시설 종류	[] 바닥분수, [] 일반분수, [] 벽면분수(폭포 등), [] 실개천형, [] 기타		
운영 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민간 (시설구분: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관광지·관광단지, [] 도시공원, []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 공동주택, [] 대규모점포)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월 ~ 월)	바닥면적	m ²
용수 종류	[] 수돗물(%), [] 지하수(%), [] 하천수, 계곡수(%), [] 기타()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 ³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설치(종류: 처리능력: m ³ /일), [] 미설치		
소독 방법	1. [] 염소(), [] 오존, [] 기타() 2. [] 소독기 설치, [] 미설치		
방류수 처리계획	1. []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수도법」 제27조제1항) 2. [] 공공하수도 외로 유입(「하수도법」 제28조 등)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필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

귀하

장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신고인란 중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신고번호 제 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시설 주소	(전화번호:)		
시설 종류	[] 바닥분수, [] 일반분수, [] 벽면분수(폭포 등), [] 실개천형, [] 연못형, [] 기타		
운영 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민간 (시설구분: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관광지·관광단지, [] 도시공원, []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 공동주택, [] 대규모점포)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 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월 ~ 월)	바닥면적	m ²
용수 종류	[] 수도물(%), [] 지하수(%), [] 하천수, [] 계곡수(%), [] 기타()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 ³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설치(종류: 처리능력: m ³ /일), [] 미설치		
소독 방법	1. [] 염소계(), [] 오존, [] 자외선, [] 기타() 2. [] 소독기 설치, [] 미설치		
방류수 처리계획	1. []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수도법」 제27조제1항) 2. [] 공공하수도로 외로 유입(「하수도법」 제28조 등)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m²)]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총3쪽 중 제1쪽)

신고번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신고일자	년 월 일
제 호			

1. 개요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시설 주소	(전화번호:)			
시설 종류	[] 바닥분수, [] 일반분수, [] 벽면분수(폭포 등), [] 실개천형, [] 연못형, [] 기타			
신고 사유	[] 공공기관, [] 민간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 관광지·관광단지, [] 도시공원, []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 공동주택, [] 대규모점포)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월 일 ~ 월 일)	바닥면적	㎡	
용수 종류	[] 수돗물(%), [] 지하수(%), [] 하천수, [] 호수수(%), [] 기타()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설치(종류: 처리능력: ㎥/일), [] 미설치			
소독 방법	1. [] 염소(), [] 오존, [] 자외선, [] 기타() 2. [] 소독기 설치, [] 미설치			
방류수 처리계획	1. []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수도법」 제27조제1항) 2. [] 공공하수도 외로 유입(「하수도법」 제28조 등)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필요			

2. 수질검사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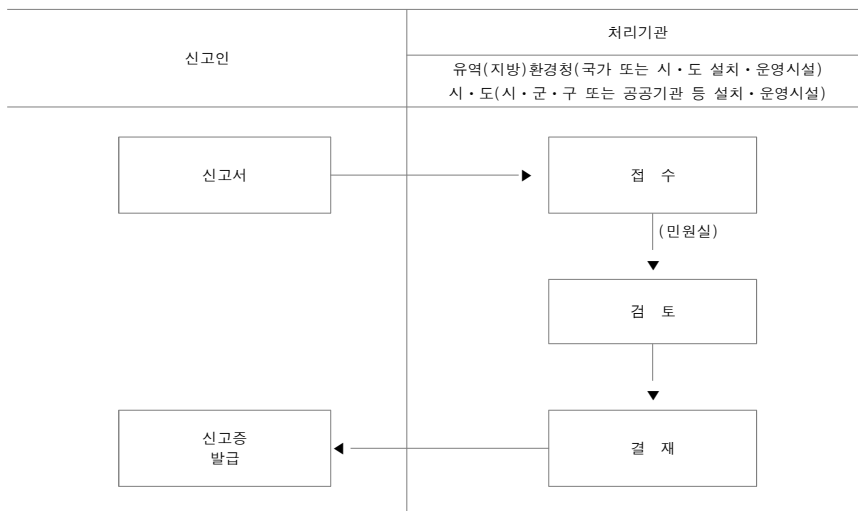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제73조제3항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 서식 제40호의2, 제40호의3, 제40호의5는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 공개-----.	④ -----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 공개-----.		
<신 설>	제26조의3(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의 방지와 누출·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제26조의3(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등의 방지와 누출·유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illegible]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 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생 략) ②·③ (생 략)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확인</u>----- ----- ----- -----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 ----- -----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효율적인 폐수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의2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연구 계획 또는 폐수 활용 계획(각 계획에는 목적, 필요량, 운반계획, 처리계획 등 포함)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 제1항제2호, 제2호의2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생 략)
---	---	---	--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1. · 2. (생략)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②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비

점오염저감계획서(법 제53조
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4. (생략)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생략)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
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
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
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신 설>

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

도면(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이 유입되지 않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우유출수의
유입구와 유출구를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활동으로 비접
오염물질이 -----

가.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

<신 설>

④ ~ ⑦ (생 략)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 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식의 청소 계획

나. 강우유출수 오염도 육안 검사, 덮개 점검, 부지 청소 등 사업장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 이행 계획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 기관) -----

-----.

1. (현행과 같음)
2. -----
----- 한국환경연구원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기술 개발·보급 및 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조사·관리를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998